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16일(금)

나.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## 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2년 11월 22일(목)

## 4. 개정근거

「하수도법」(법률 제11248호, 2012. 8. 2 시행) 제41조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5년도 이후 7년간 동결된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그간의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명시하였으며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안 제10조제1항 별표 3 “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”에서 분뇨 청소수수료는 최근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동결하였고,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본( $0.75\text{m}^3$ 까지) 부과금액 18,810원은 현행 대비 8.2% 인상된 20,350원으로, 초과 부과금액( $0.1\text{m}^3$ 당) 1,430원은 현행 대비 7.7% 인상된 1,540원으로 각각 인상 하였음.

2005년도 대비 경유가격은 61.6%, 소비자물가는 22.0% 인상되었고, 2007년도부터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청소수수료를 인상하여 왔음. 청소수수료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에 편중 소요되고 있고, 종사원의 임금 수준이 구 환경미화원 임금의 약 70.25%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.

## 6. 관계법령

### 하수도법

[시행 2012.7.22] [법률 제10893호, 2011.7.21, 타법개정]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.